

#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민경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6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26.

발의자 : 민경욱 · 정유섭 · 추경호  
김석기 · 김명연 · 정태옥  
박덕흠 · 서청원 · 김선동  
김학용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

제6조 제2항 제1호).

법률 제 호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공항소음대책사업”을 “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